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2. 28.(화) 11:00 브리핑 시	배포 일시	2023. 2. 28.(화) 09:00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식 (044-201-2511)
		담당자	서기관 이형은 (044-201-251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한달 연장

- 강화된 검사체계 유지, 소독·점검 지속 추진, 산란계 특별관리 등 -

주요 내용

- **(상황진단)** ①과거에 비해 2월 철새수가 많고* ②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③철새가 복상을 위해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위험도 증가

* '23.2. 130만수 확인: 전월('23.1.) 대비 6.6% 감소, 전년 동월('22.2.) 대비 13.3% 증가

** GPS 부착 개체 분석 결과, 일부 철새가 충남·충북·경기 지역으로 이동 확인(2.14.~2.21.)

- **(방역 조치계획)** 당초 2월말에 종료하기로 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 **(검사)**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말까지 유지, 본격적인 철새복상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철새복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등

** 고위험지역(5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발생할 경우 일주일 주기로 3회 정밀검사 실시

- **(소독·점검)** 「일제집중소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농장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 **(산란계)**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하여 통제초소 운영, 소독전담차량 배치, 방역실태 점검 등 총력 대응

* 3개 시도, 10개 시군 → 5개 시도, 12개 시군(충북 음성, 전북 김제 추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7일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어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1.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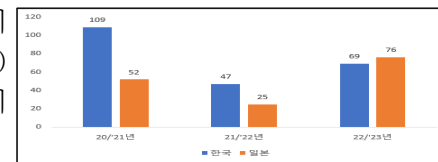
[1] 발생상황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3년 2월 28일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69건이 발생하였다.

	‘20~‘21년	‘21~‘22년	‘22~현재
발생건수(건)	109	47	69
전체 살처분 두수(만마리)	2,993	731	629
산란계 살처분 두수(만마리)	1,671	441	286

이번 시즌에는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10월 이후 45개 주에서 280건이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였다. 유럽도 작년 10월 이후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에서 가금농장 발생이 544건이다.

또한, 일본은 작년 10월 이후 76건이 발생하여 역대 최대 발생(기준 52건) 건수를 기록중이며, 산란계에서 53건이 발생하였다.



* 발생(일본/우리나라, 건): ('20/21) 52/109 → ('21/22) 25/47 → ('22/23) 76/69

* 살처분(일본/우리나라, 만마리): ('20/21) 990/2,993 → ('21/22) 190/731 → ('22/23) 1,449/629

우리나라도 지난 시즌에 비해 가금농장에서 22일 빨리 발생('22.10.17.)하였고 야생조류도 총 166건 검출되어 최초 발생 후 동일 기간을 비교할 경우 작년(62건)에 비해 항원 검출이 2.7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올해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오리에서 병원성이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의 수평 전파를 차단하였다.

[2] 상황진단

그간 40여일간 비발생이었다가 최근 가금농장에서 6건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①올해 2월 철새가 작년 2월보다 13.3%가 많은 130만수로 작년과 달리 우리나라에 철새가 많고, ②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③철새가 복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야생조류: ('22.10.) 10건 → ('22.11.) 59 → ('22.12.) 40 → ('23.1.) 47 → ('23.2.) 10

** GPS 부착 개체 분석 결과, 일부 철새가 충남·충북·경기 지역으로 이동 확인(2.14.~2.21.)

▶ 과거 철새는 12월~1월에 정점, 2월 말~3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북상함에 따라 3월 이후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1/22년(만수) : ('21.12월) 152 → ('22.1월) 151 → (2월) 115 → (3월) 45

또한, 과거에도 2월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3~4월 봄철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져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시기이다.

* ('21.2월) 20건, ('22.2월) 16건 /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당초 2월말에 종료하기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2. 방역 조치계획

■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및 비상방역체계 유지, 행정명령·공고 연장

3월말까지 연장한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그간 추진중인 강화된 방역조치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조치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또한,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한다.

또한 기존에 발령되어 시행중에 있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행정명령(11건)·공고(10건)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감염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강화된 검사체계 운영, 고위험지역 관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 말까지 유지한다. 전체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축종별로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한다.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등

특히, 최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볼 때 주변이 오염되었다고 보이는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의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가금농장(81호)에 대해 3회 반복*하여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일제 정밀검사(2.24. 완료) 후 7일마다 2회 추가 정밀검사(단, 육계는 임상예찰)

그리고 2월에 철새 개체수가 많고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였던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5개 시·도, 20개 시·군)하여 해당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일주일 주기로 3회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경기) 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포천·연천 / (충남) 천안·아산·예산·당진 / (세종) / (전북) 정읍·김제·부안·고창 / (충북) 음성·진천·괴산·충주

■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점검, 야생동물 관리 등 추진

2월 철새 이동상황을 고려하여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집중소독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농장 전담관은 농장의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생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쥐,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야생동물 차단을 위해 축사 출입통로 생석회 도포, 구서작업 등 정기적 설치류 제거, 환기구·배수구 등에 차단망 설치, 축사 틈새 막기 등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대규모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해 3월 말까지 광역 방제기, 살수차, 방역차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도 24시간 운영 원칙을 유지하고,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10일 주기로 환경검사를 실시하는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도 유지한다.

계열사는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팀’을 구성하여 소속농가의 소독·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 계란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계 특별관리

국내 계란 가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던 ‘22년 12월 5,070원(산지가격, 특란30개)을 보였으나, 농가와 정부의 방역·수급 안정 노력 등으로 지난해 2월보다 약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지가: (평년2월) 3,420원/30개, (‘22.2.) 4,353 → (‘23.1.) 4,731 → (2.24.) 4,204

과거 산란계 밀집단지에서 발생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하여 통제초소 운영, 소독 전담차량 배치, 방역실태 점검 등 총력 대응한다.

* 3개 시도, 10개 시군 → 5개 시도, 12개 시군(충북 음성, 전북 김제 추가)

또한, 곡교천, 청미천 등 고위험 하천(10개소)* 인근 산란계 농장(119호)**에 대한 주 1회 검사체계도 3월까지 지속 유지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해 통제초소 운영, 알 전용차량 운영 등 기존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 곡교천, 풍서천, 미호강, 발안천, 황구지천, 안성천,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 한탄강

** (경기) 안성(8)·여주(10)·용인(8)·이천(6)·평택(11)·포천(9)·화성(7) / (충남) 천안(27)·아산(4) / (충북) 음성(10)·진천(6)·청주(3)·충주(1) / (세종) 세종(9)

3. 당부사항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방역 관계자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한다면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1588-9060, 1588-4060

붙임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기간 방역조치

2. 행정명령 및 공고 발령내역
3. 가금농장 5대 차단방역 조치

담당부서 <총괄>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식 (044-201-2511)
		담당자	서기관 이행은 (044-201-2515)
담당부서 <방역>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수급>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정재환 (044-201-2331)
		담당자	서기관 이상훈 (044-201-2338)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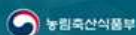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기간 방역조치

구분	발생 시	3월 이후(조정)
위기 단계	· “심각” 단계	· 현행 유지
중수본·상황실	· 중수본 및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현행 유지
정밀검사	· 정기 정밀검사(PCR) 주기 단축 및 전(全) 축종 출하전 검사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등	· 기존의 강화된 정밀검사체계 유지 ·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 3km 내 농장 3회 반복 정밀검사 · 철새복상시기 고위험지역(20개 시군) 철새도래지 수변(~3km 내) 농장 정밀검사 강화 · 토종닭 출하농가 도축장 검사 강화 * (현행) 출하농가 10% → (강화) 30% · 철새 본격적 복상시기 잠재 위험요인 조기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 실시(3월말)
행정명령·공고	· 행정명령(11건) 시행	· 행정명령 11건 연장(~3.31.)
	·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10건) 시행	· 방역기준 공고 10건 연장(~3.31.)
입식·출하 관리	· 일제 입식·출하기간 단축 * (육계) 5일 내, (육용오리) 당일 출하(당일 출하가 어려울 경우 3일 이내 동별 출하)	· 현행 유지
	· 육계·육용오리 입식 제한기간 14일	· 현행 유지 * 다만, 1.11일 이후 비발생 사도는 7일로 단축
오리 사육제한	· ‘22.11월~’23.2월 시행	· 우리 부 사업 종료 * 지자체는 자체 사업 연장 시, 검역본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위험도 평가 후 우리 부와 협의·시행
소독	·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인근 도로, 밀집단지 및 대규모 농장 등 매일 소독	· 현행 유지
	·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 주기적인 소독 및 환경검사 실시	· 현행 유지
점검	· AI 현장점검반 및 특별방역단 운영	· AI 현장점검반 유지 * 철새복상시기 고위험지역(5개 시도, 20개 시군), 서해안 산란계 집중 관리지역(12개 시군) 점검 확대·강화
	· 오리 입식 전 환경검사 및 방역점검	· 현행 유지
	· 방역지역 해제 등에 따른 점검 강화 * 지자체 점검 후 입식 허용, 오리 농장은 3단계 점검 후 입식 허용	· 현행 유지 * 다만, 신규 입식에 한해 3단계 점검
초소 운영	· 산란계 밀집단지	· 현행 유지
	· 종오리, 대규모 농장	· 지자체 위험도 평가에 따라 고위험 농장만 유지
전담관 운영	· 현장 방역수칙 전파·점검(주 3회 이상)	· 현행 유지
전통시장 및 계류장 관리	· 일제 휴업·소독의 날 강화(주 1회)	· 현행 유지
	· 산 가금 유통금지 관련 행정명령	· 현행 유지
계열사·협회	· 계열·소속 농장 방역 지도·점검·홍보	· 현행 유지

붙임 2

행정명령 및 공고 발령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조정기간
행정명령 (11개)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2.9.15. ~’23.2.28.	~’23.3.31.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및 농장주 등 관리하에 농장 진입 * 진입가능차량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농장		
	6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22.10.1. ~’23.2.28.	
	7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8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10	중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 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11	전국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가금농장	’22.10.12 ~’23.2.28.	
공고 (10개)	1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23.3.31.
	2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3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4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22.10.1. ~’23.2.28.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9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10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통제하에 진입 허용 및 소독 등 관리	가금농장	’22.11.28. ~’23.28.	



핵심차단방 5대 수칙



1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실시

-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
-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장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등 조치



2 농장 출입하는 사람 (농장주, 종사자 포함)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신발(덧신) 착용, 대인소독 실시



3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틈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4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축사 입구와 전실 등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발판 소독조 내 소독액이 오염될 경우 즉시 또는 주기적으로 교체



외부용
<오염구역>



내부용
<청정구역>

5 축사 내로 기계·장비 (왕거살포기, 로터리기 등)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 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를 충분히 세척·소독

